

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1. 대상 펀드

-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(주식)

2. 공시일자 : 2016 년 03 월 31 일

3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

-“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(이하‘자본시장법’)”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 의방법등) 제 3 항제 5 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해지) 제 1 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 해야 함.

- 『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』에 따라 1 개월 공시 1 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 될 경우(원 본액 50 억초과등) 추가공시

4.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: 해당사항 없음